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6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서일준 · 서천호
김기웅 · 강명구 · 한기호
박형수 · 백종현 · 박준태
성일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.

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국가기간산업·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.

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유치업종 추가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,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5항,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).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본문 중 “제5항에도”를 “제6항에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7항) 전단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, “제5항제3호부터”를 “제6항제3호부터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8항) 중 “제5항에”를 “제6항에”로 한다.

⑤ 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(이하 “인구감소지역”이라 한다)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제4항 후단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7조제6항 중 “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”을 “제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”로 한다.

제7조의2제6항 중 “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”을 “제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”로 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”을 “제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제6조제5항”을 “제6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인구감소지역에 개발 중인 국가산업단지

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“제6조제6항에”를 “제6조제7항에”로 한다.

제39조제1항 단서 중 “제6조제8항에도”를 “제6조제9항에도”로 한다.

제39조의17제5항 중 “제6조제8항에도”를 “제6조제9항에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국가산업단지의 지정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 다만, 산업</p>	<p>제6조(국가산업단지의 지정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(이하 “인구감소지역”이라 한다)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제4항 후단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 <p>⑦ -----제6항에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단지가 지정된 후 공모를 통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모할 수 있다.

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(제6항 단서에 따라 공모를 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).

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(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 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)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

-----.

⑧ 제7항-----
-----제6항제3호부터-----

-----.

-----제7항-----

-----.

⑨ 제6항에-----

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(일반산업단지의 지정) ① ~ ⑤ (생략)

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.

⑦ (생략)

제7조의2(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) ① ~ ⑤ (생략)

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,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.

⑦ (생략)

제8조(농공단지의 지정) ① ~ ③ (생략)

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.

⑤ · ⑥ (생략)

제22조(토지수용) ① (생략)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조의

-----.

제7조(일반산업단지의 지정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-제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-제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-----
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농공단지의 지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제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-----.
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토지수용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외한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
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----.